

(치의(예)학과) 통합대학 학사제도 비교표 및 중요 학칙 알림

□ 학적

구분	현행 제도 기준(강릉원주대)	2026학년도 통합대학 기준(강원대)	안내 사항
• 학번 체계	- 8자리 학번	- 9자리 학번	- 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학번(8자리) 유지 - 2026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9자리 학번 - 입학년도(4자리) + 과정구분(1자리)* + 순번(4자리)** * 예) 학부1, 석사2 등 ** 캠퍼스 범위 설정 후 랜덤 부여
• 각종 증명서의 학위수여자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총장	- 강원대학교 총장	- 단, 증명서 내 동일학과, 동일단과대일 경우 캠퍼스명 표기
• 질병휴학	- 통산 휴학기간(6학기)에 포함 - 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 4학기 - 진단서 4주 이상	- 통산 휴학기간(6학기) 미포함 - 진단서 5주 이상	- 통산 휴학기간(6학기) 미포함 - 진단서 5주 이상
• 육아휴학	- 본인 4학기, 배우자 2학기	-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 통산 휴학기간(6학기) 미포함
• 창업휴학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증빙서류: 창업휴학 확인서(직인),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재입학	- 제한없음	- 1회	- 단, 2026학년도 이전에 재입학한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이력을 없는 것으로 간주함, 횡수 미산입
• 타대학 교류	- 2개학기 까지 교류 가능 - 총 35학점 이수 가능(OCU포함)	- 4개 학기까지 교류 가능 - 졸업학점의 1/2까지 이수 가능(OCU포함)	- 계절학기 제외

□ 수업

구분	현행(강릉원주대)	2026학년도 통합기준(강원대)	안내 사항
• 수업시간표 시간단위	- 1교시 : 30분 단위 - 75분/50분으로 표기 및 배정	- 75분: A1~A6로 표기 - 50분: 1~14교시로 표기 및 배정	- 1교시(09:00~10:00), A1교시(09:00~10:30) - 강릉·원주 캠퍼스는 0교시(08:00~09:00) 별도 운영
• 수강학점 미포함	- 학군단 교과목	- 학군단 교과목 - 꿈-설계 교과목	- 꿈설계 교과목 1-1학기 진로탐색과꿈-설계, 3-2학기 취업창업과꿈-설계
• 학점이월	- 전학년 이월 가능 - 성적 우수자(3.75) 중복 이월 가능	- 1학년 1,2학기만 이월 가능 - 성적 우수자(3.75) 중복 이월 불가	- 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전학년 이월 및 중복이월 가능
• 수강취소기간	- 1/4선까지 취소 가능	- 없음	- 수강변경기간까지만 취소 가능

□ 성적

구분	현행(강릉원주대)	2026학년도 통합기준(강원대)	안내 사항
• 성적 등급 비율	- 상대평가 비율 조정 가능 - 동점자 처리 가능(5% 이내)	- 상대평가 비율 조정 불가 - 동점자 처리 불가	
• 절대평가 과목	- 10명 미만, 학군단,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하는 교과목	- 20명 미만, 실험·실습, 교직, 학군단 교과목	- 범위 확대
• 합반 평가	- 동일 교과목 합반 평가	- 동일 교과목, 동일 교수자 합반 평가	

• 성적 인정 기준 (F학점 부여)	- 수업일수 1/4 이상 결석	- 수업일수 1/3 초과 결석	강원대학교 학칙 제91조(성적평가) 3항 참고 (5p)
• 자퇴·휴학자의 성적 인정 기준	- 수업일수 3/4선 기준	- 수업일수 2/3선 기준	- 2/3선 이전 휴학, 자퇴자는 수강신청 철회 - 2/3선 이후 휴학, 자퇴자는 성적 인정, 다만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는 성적포기 가능
• 조기 취·창업 출석인정 신청	- 창업 공결 없음	- 창업 공결 제도 도입	- 제출서류: 창업지원부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강신청 확인서
• 공결 최대 일수	- 총 수업시간의 1/2 초과 불가	- 총 수업시간의 1/3 초과 불가	

□ **졸업 및 예과 수료 (학사경고 포함)**

구분	현행 제도 기준(강릉원주대)	2026학년도 통합대학 기준(강원대)	안내 사항
• 학과명 변경 시 졸업학과 표기	- 졸업 당시 학과 표기	- 입학 당시 학과 표기	- 단, 소속학과 학생 및 교원 동의 시 변경된 대학(부) 및 대학원 또는 모집단위명으로 수료 또는 졸업 가능
• 졸업 평점평균 (예과 수료)	- 평점평균 2.0 이상	- 평점평균 1.75 이상	- 치의예과는 예외 (유급기준 : 2.0 이상)
• 졸업 인증제	- 비교과 졸업인증 운영	- 인증제 폐지	- 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비교과 졸업인증제 유지 , 비교과 졸업인증 시 강원대 학위번호 부여 - 치의예과 학생은 입학 후 토익 750점 이상 취득
• 치의예과 유급	① 치의예과 학생은 전체 학년 성적평점평균이 2.0 미만인 경우 유급되며, 2학년 1학기부터의 전공기초과목을 재이수해야 한다. ② 치의예과 학생은 수료에 필요한 영역별 학점을 2학년 2학기까지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급되며, 해당 영역별 학점을 재이수해야 한다.	치의예과 학생은 해당 학년 성적평점평균이 2.0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정된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되며, 해당 학년에 이수한 모든 학점이 무효가 되고 이를 재이수해야 한다. 다만, 유급으로 재이수하는 과목의 성적 등급은 제한하지 않는다. 단, 「C+」등급 이상인 교양교과목 성적은 유지한다. (전공 교과목 성적은 무효 처리)	- 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이전의 현행 제도 적용

강원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中 중요 내용 알림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강원대학교 학칙

제3절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제61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병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후에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 휴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통산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6학기 이내), 병역, 감염병 유행, 재난 등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기간은 통산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사과정 : 6학기 이내(예과과정 3학기, 편입학생 3학기, 약학과 편입학생 6학기)
2. 석사과정 : 4학기 이내
3. 박사과정 : 6학기 이내
4. 학·석사통합과정 : 10학기 이내
5.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 이내

제62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의 등록기간에 복학할 수 있다.

② 군입대휴학자로서 학기초 4주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총장이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전조의 휴학 및 복학 허가사항을 학(부)장 또는 원장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휴·복학 세부 사항은 「강원대학교 휴·복학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제63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학(부)장 또는 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4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이중학적을 가진 자

4.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3회에 거쳐 받은 자 또는 일반대학원생으로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은 자. 다만, 학사과정 학생이 당해 학기 성적 확정 결과 졸업 또는 수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적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6. 통산 2회(다만, 간호학과·수의학과·의학과·치의학과는 통산 3회) 유급된 자
7. 기타 사유로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4장 대학 학사운영

제2절 학점취득

제81조(수강학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및 학과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과는 수강 학점을 달리 정한다.
1. 건축학과(5년제), 도시건축학과(5년제), 건설환경공학부,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 21학점
 2. 의예과, 치의예과: 22학점
 3. 의학과, 치의학과: 23학점

제3절 수업·시험 및 학사경고

제91조(성적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은 시험 및 과제 평가, 출석 상황, 학습 태도 등을 종합하여 부여하고,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등급	A ⁺	A ⁰	B ⁺	B ⁰	C ⁺	C ⁰	D ⁺	D ⁰	F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및 평점을 부여하기 어려운 교과목은 '가' 또는 '부'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총 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등급 또는 '부'를 부여한다.** 다만,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 또는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 중 조기 취업자·창업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교과목 성적이 'C+'등급 이하 경우에는 재이수 할 수 있다.

제92조(학사경고) ①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예외로 한다.

- ② 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수를 3학점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간호대학 간호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치과대학 치의예과 및 치의학과,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는 **예외**로 한다.

제4절 학년 수료 및 졸업

제94조(유급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학과에 속한 학생 중 성적이 부진한 학생에 대하여 유급 또는 제적을 처분 할 수 있다.

1. 간호대학: 간호학과
2.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3. 약학대학: 약학과
 4.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5.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6.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7. **치과대학**: 치의예과, 치의학과, 치위생학과
- ② 유급 및 제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사운영규정 中 유급 관련

제48조(유급) ① 학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유급은 재학 기간 중 매년 1회에 한한다.

<개정 2026.3.1.>

② 단과대학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학년 말에 유급을 처분한다.

1.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2.0미만인 경우

2. 매 학기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필수 교과목 중 한 과목 이상 'F'등급을 받은 경우(다만,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약학대학 약학과의 경우 매 학년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필수 교과목 중 3과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3.1.>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유급 처분을 받은 학생이 당해 학년도에 취득한 성적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는다.

1. 'C+'등급 이상인 교양 교과목

2.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학과의 전공 교과목 <개정 2021.2.22.>

가. 수의과대학 수의예과·수의학과 : 'B0'등급 이상

나. 의과대학 의예과 : 'A0'등급 이상

다. 간호대학 간호학과 : 'B0'등급 이상 <신설 2025.8.1.>

라.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 'B0'등급 이상 <개정 2026.3.1.>

④ 학생은 이수 중인 학년도의 1학기 말 성적 평가 결과 제2항제2호에 따라 유급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2학기에 휴학할 수 있다.

⑤ 유급 처분을 받았거나 제5항에 따라 휴학하는 학생은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⑥ 단과대학의 장은 유급 처분 대상이 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시작일 전 20일까지 유급을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사운영규정 中 공결 관련

제27조(공결) ①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을 점검한 결과 결석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2.22.>

1.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된 경우. 이 경우 소속 학부·학과의 장 및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에게 소집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안되며,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학생에게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후단신설 2024.3.1.>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3.6.16.>

- 가. 체육특기자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신설 2023.6.16.)
 - 나. 국내외 각종 학술대회, 교류행사 등 (신설 2023.6.16.)
 - 3.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다만, 학교 밖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2.22.>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본인의 결혼 : 5일
 -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 다. 본인의 출산 : 20일
 -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10일 <개정 2022.7.21.>
 -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 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개정 2022.7.21.>
 -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3일 <개정 2022.7.21.>
 -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3일 <개정 2022.7.21.>
 -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 6.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신설 2023.6.16.)
 - 7. **학기 당 4일 이내(월 1일에 한함)의 생리 공결의 경우. 다만,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3.6.16.)
 - 8.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6.16.>]
 - ② 제1항에 따라 공결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부·학과의 장 또는 부서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6.>
 -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공결일 수가 결석일 수와 합하여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3.1.>
-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8.2.22.>]
 [전문개정 2018.2.22.]
 [제목개정 2018.2.22.]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2.22.>]
- ④ 그 밖에 공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6.3.1.]

구 분	현 행	2026년 1학기 적용
F 또는 부 학점부여	- 결석일 수로 1/3 초과 계산 - 예시 · 15회 수업 결석 6회부터 · 30회 수업 결석 11회부터	- 결석시간으로 수업시간의 1/3 초과 계산 - 예시 · 1학점×15주=15시간 → 5시간 초과시 · 2학점×15주=30시간 → 10시간 초과시 · 3학점×15주=45시간(3-3-0) → 15시간 초과시 · 3학점×15주=60시간(3-2-2) → 20시간 초과시
공결인정일	- 수업시간의 1/3까지 출석으로 인정	- 공결 + 결석시간의 합이 수업시간의 1/3 초과시 학점 미부여
공결승인	- 단과대학장(학과장 위임)	- 학과장(전공주임)
공결처리 요청기간	- 학기중 제출시	- 공결 발생 후 14일(2주) 이내 제출, 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시 미인정
예외사유	- 미인정	- 체육특기자 등 예외 인정